

수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(의 정 담 당 관)
(경유)

제목 제2301차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결과 통보

1. 서울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-123731(2019.12.30.)호와 관련입니다.
2. 귀 기관에서 요청한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.
 - 가. 건 명 : 본관청사 중앙냉난방 및 공조설비 등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
 - 나. 심사번호 : 2019121456
 - 다. 심 사 일 : 2019. 12. 31.
 - 라. 심사결과 : 적정

유의사항

-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,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주체(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된 자)에게 시행하는 기술용역에 한함.
- 타당성심사 및 용역발주심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설계내역서와 과업내용서는 용역발주 전에 기술용역관리시스템(타당성심사)에 등록(메일송부)하여 심사업무가 종결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.
- 심사결과(내용)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가능함(사유 및 근거자료 등 제출)
- ※ 용역발주전 첨부된 기술용역 추진시 사전 확인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시행할 것

붙임 : 제2301차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결과 1부. 끝.

서울특별시



전문관	조기성	설비심사팀장	12/31 안계훈
협조자	기술관리팀장	이상석	

시행 기술심사담당관-23803 (2019.12.31.) 접수 의정담당관-12446 (2019.12.31.)
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6층 (무교동) / http://infra.seoul.go.kr
 전화 2133-8583 /전송 2133-0745 / paul1201@seoul.go.kr / 대시민공개

제2301차 기술용역타당성심사 결과

- **건 명** : 본관청사 중앙냉난방 및 공조설비 등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
- **심사일** : 2019. 12. 31.
- **요청부서** : 서울시의회사무처(의정담당관)
- **사업개요**
 - 용역비 : 19,807천원
 - 용역기간 : 착수일로부터 45일
 - 사업내용 : 시의회 본관청사 : 7,175㎡(지하1층/지상9층)
 - 공기조화설비, 환기설비, 냉온수기 등 교체
- **심사결과** : 적정

심사항목	심사내용
1. 용역의 필요성 (자체시행 47개 공종대상여부) □ 대상 ■ 미대상	○ 서울시의회 노후 냉난방 및 환기시설물 등 개량사업으로 안정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및 에너지 절감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전문업체 용역의 필요성이 인정됨. 알림 : 주요 공종이 자체시행대상 용역인 경우 발주부서 자체추진
2.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- 개략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- 소요 기술인력 산정의 적정성	○ 용역비 조정 : 없음(19,807천원) - 개략공사비 적정 및 자체 요율 감 적용
3. 조건부여 이행 확인사항 - 용역성과공개,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심의절차이행 등	○ 관련 법령 및 방침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'기술용역 추진 시 사전 확인사항(첨부)'을 반드시 확인 및 이행할 것 ○ 타당성심사 결과를 반영한 최종내역서와 과업내용서는 용역발주전에 기술용역관리시스템(타당성심사)에 등록하여 심사업무가 종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.
4. 과업의 내용, 범위의 적정성 등 기타 검토의견	○ 설계용역 시행과정에서 담당공무원 및 용역 참여기술자간 합동회의를 주기적으로 추진할 것(건설사업 업무추진프로세스 개선방안, 행정2부시장방침 제301호, '14.10.13.) ○ 2030 서울생활권계획 협의대상 여부 □ 대상 ▨ 비대상
5. 리스크 관리항목 적정성 - 용역지연-중단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 - 용역비 증가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	○ 용역발주시 명확한 과업범위를 제시하여 용역수행중 과업 범위 변경 등으로 인한 용역비 증가를 최소화하기 바람

첨부

[기술용역 추진시 사전 확인사항]

확인항목	세부내용
용역시스템	1. 기술용역관리시스템에 추가(첨부) 등록 - 용역별추진 최종 수정된 설계내역서 및 과업내용서를 기술용역관리 시스템에 추가 등록 ※ 기술삼사담당관-600호(13.1.14) : 용역관리 시스템 개선
입찰전	2.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- 심의절차 이행 -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- 발주부서는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을 입찰 시행전에 반드시 건설기술 심의절차 이행 · 단 서울시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과 모든사항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삼사담당관과 사전 서면 협의로 건설기술심의 대체 ※ 건설기술진흥법 제19조에 의한 기술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기관은 제외(기술자문위원회에서 심의 절차 등 이행)
과업착수 보고서 제출시 확인	3. 용역실적 등재관리 - 용역계약현황 통합관리시스템 등재확인(www.cems.kr) - 담당자는 착수보고서 접수시 "건설기술용역실적확인서" 첨부 확인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실적확인서 제출(PQ)</p> </div> <p>* ②검토·③확인결과 오류발견 시, 사유기입 반려조치</p>
심사 및 심의전 확인	4. 유관부서 의견수렴 - 사업계획 수립시 TF팀 구성 등 관련부서 참여여부 확인 -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(Construction Engineering Management System:CEMS) : 건설기술용역 사업실적 및 참여기술자 정보를 관리 및 제공하는 전자운영체제 - 설계공모,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(국토교통부 고시)에 따라 용역업체는 시스템에 등재하고 등재된 용역에 대한 발주청(계약, 사업)담당자의 확인승인완료후 "건설기술용역실적확인서"를 발급받아 착수보고서와 함께 용역 감독자에게 제출
	- 기술용역타당성심사 및 건설기술심의 요청 전 유관관리부서 및 관련(유관)부서 의견 조회 등 의견수렴 · 사업계획 수립 시 계획부서, 공사부서, 유지관리부서 등 TF팀 구성은 영하여 계획단계부터 사업참여 유도 · 유지관리부서 선정여부 등 유관관리부서의 적정성 검토 ※ 행정2부시장 방침 제73호(13.5.22) : 준공예정시설물 점검관련 매뉴얼 작성

확 인 항 목		세 부 내 용
타 당 성 조사용역	5. 타당성조사 용역시 과업내용서 반영사항	- 재원조달방안 및 사업의 타당성 재검증 범위 검토 · 타당성조사 용역 수행시 재원조달방안 및 타당성 재검증 검토 시행
용 역 준공시	6.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이행할지 - 성과품공개 및 자료제공 - 기술신용역관리시스템 등록 철저히행	- 발주부서 는 '13.7.1부터 준공되는 모든 기술용역 성과품에 대해 「기 술신용역관리시스템」의 '심사심의관리 > 타당성심사 > 해 당 심사요청 상세화면(상단)성과품 등록(버튼)을 이용하여 등 록 및 서울도서관에 제출 · 용역보고서 : PDF파일 변환하여 정보소통광장에 등록(준공시) · 전체성과품 : 인쇄본 3부 및 CD 1부 서울도서관 제출(준공시) →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시 '국가중요시설 및 보안목표시 설' 등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성과 품은 반드시 비공개할 것(용역준공시 용역사 보유 성과품 파기) ※ 시장병침 제135호(13.5.24) :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 및 관리방안
설계시	7.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건설 기술 용역 추진시 - 지장물 확인할지 - 지장물로 인한 설계변경 최소화	- 공사구간내 또는 인접구간의 지하시설물도는 우리시 (통합공간정보 서 비스)내 지장물 현황과 비교 검토 · 아울러 지반조사, 현황 측량시에도 수치지형도를 최대한 이용
내 진	8. 내진대상 시설물 내진설계 반영 여부	- 모든 공공건축물(규모관계 없이) 및 지진재해대책법에서 정한 국가하천 수문, 교량 · 터널 등의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해 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시 내진설계를 반영 ※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 작성확인절차(구조기술사)